

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. 02. 13 (수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8. 02. 20(수)
- 다. 상정일자 : 2008. 02. 21(목) 제14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자치행정과장 김일래)

가. 행정 내·외적 변화로 기능이 미약해진 부서간 통·폐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를 위한 경쟁력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자 신설되는 부서와 폐지되는 부서간 정원을 직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, 복식부기, 균형발전 등의 한시정원을 본 정원으로 흡수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정원의 총수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총수 조정(안 별표1)

구분	합계	정무직	일 반 직							연구직	지도직	별정직	기능직
			소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			
개정 전	609	1	478	4	26	124	147	114	63	1	22	17	90
개정 후	615	1	485	5	25	124	150	116	65	1	22	17	89
증감	+6	-	+7	+1	△1	-	+3	+2	+2	-	-	-	△1

○ 총 정원 : 609명 ⇒ 615명 (+6명)

▶ 집행기관의 정원 : 597명 ⇒ 603명 (+6명)

▶ 의회사무과 정원 : 12명(변동없음)

- ※ 현재 조례 조문상 정원이 615명으로 조문 개정 없이 별표1의 직급별 정원만 조정함. 조례 조문상 정원은 615명이나 2008.2월 현재 실제 정원은 2007.7.30 기한 동계올림픽 한시정원 4명(6급1,7급2,8급1) 과 2007.12.31 기한 사업별예산 한시정원 2명(7급1, 8급1)이 줄어든 609명임.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 상향 조정
 - 본청 5급 △1 ⇒ 4급~5급 +1
- 부서신설에 따라 본청 기능 강화 : 총 7명
 -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 업무 보강 : 7급 1명
 - 레포트츠 관련 업무 보강 : 7급 1명
 - 관광 및 경제업무 보강 : 7급 1명, 8급 1명
 -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수행 : 8급 1명
 - 지역개발 분야 보강 : 9급 1명
- 직속기관 8급 △1 ⇒ 본청 8급 +1(농촌개발사업 보강)
9급 △1 ⇒ 직속기관 기능10급 +1(농기계 대여)
- 사업소 기능9급 △2 ⇒ 일반직 9급 +1(시설직 보강)
기능10급 +1(직급책정기준 부합)
- 읍면 6급 △5(재무담당) ⇒ 본청 6급 +5
- 본청 9급 △5 ⇒ 읍면 9급 +5(읍면 정원(세무업무) 보전)
- 부칙의 한시정원을 본 정원으로 흡수 : 총 5명(6급 2명, 7급 2명, 8급 1명)
 - 복식부기 3명 : 6급 1명, 7급 1명, 8급 1명(기한 2008.12.31)
 - 균형발전 2명 : 6급 1명, 7급 1명(기한 2008.06.30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상진)

가. 본 조례안은 한시정원 발생, 부서신설,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여러

가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나. 주요 검토내용을 살펴보면

-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당초 5급에서 4~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, 한시정원의 기한 도래에 따라 발생한 6명에 대하여는 “별표1”의 직급별 정원만 당초 609명에서 615명으로 6명으로 증가되고 조례정원은 615명에서 변동이 없으며,
- 생활민원, 레포츠, 관광 및 경제 등 신설되는 부서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인원을 보강하고, 직속기관·사업소의 인원을 업무성격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였음.
- 읍·면 6급 재무담당업무를 본청으로 흡수하고 세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읍·면 9급으로 정원을 보전하고,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한시 정원 5명은 본 정원으로 흡수하는 내용으로,

다. 결과적으로,

- 실·국을 둘 수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관련규정의 개정과 행정기구의 통폐합 및 업무의 일부조정 등의 사유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,
- 위임된 권한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보다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